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169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나5169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6691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김성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8.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669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7,74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정, 판사 권순호, 판사 강희석